[2018년, 24회 합격] 법무사단기 김*성 법무사님

1차시험 점수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법	민집법, 상업등기법	부등법, 공탁법
	60 (9개+21개)	68 (29개+5개)	78 (32개+7개)	68 (19개+15개)
2차시험 점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소법, 민사사건서류	부등법, 등기신청서류
	44.7	31 / 22.5	58.5 / 16.25	42 / 20.125

[주제 1] 수험기간

1. 수험기간

저는 법무사 시험에 뛰어들기로 마음을 먹고 바로 학원에 등록하여 현장 강의를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공부를 지속해 나아가면서 여러 교수님들로부터 공부방법이나 과목별 강약조절등 수험에 필요한 모든 스킬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 시기적절하게 7월 즈음에 결심이 서서 바로 학원을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마침 그 즈음에 1순환이 시작하는 시기여서 학원 커리큘럼에 잘 맞춰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수 험기간은 2015년 7월 부터 시작해서, 2차 시험을 치르는 2018년 9월까지로 39개월 즉, 대략 3년 정도 입니다만, 중간에 집안 사정 때문에 3개월 정도 공부를 쉬긴 했기 때문에 수험에 전념한 기간은 36개월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서울대입구역 근처 고시원에서 자취를 1년 반 정도 하였고 나중에는 집에서 통학을 하였습니다. 이런 통학문제도 공부하는데 큰 영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통학하는 시간을 짜투리 시간으로 활용하여 공부를 좀 더 할수 있어서 도움이 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편함과 피곤함을 감수하여야 하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2016년 6월에 법무사 1차 시험을 처음 치렀으나, 그 당시 긴장도 많이 하고 시간조절을 실패한 탓에 아쉽게 합격 컷에서 1점 차이로 불합격의 쓴 고배를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곧 바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여 다음 해인 2017년 6월에는 평균 68.5 점으로 1차에 합격을 하였고, 같은 해인 2017년 9월 법무사 2차 (동차) 시험을 거쳐서 2018 년 9월 법무사 2차(기득권) 시험에 응시하여 결국 합격 하였습니다.

2. 학원선택 및 교수님 선택

너무 아쉽게도 저의 첫 법무사 시험인 2016년 제 22회 법무사 1차 시험은 낙방을 하고 이후 '법무사 단기학원'으로 학원을 옮겼습니다. 처음 법무사 단기 학원을 알게 된 것은, 1차 시험이 근접한 5월, 6월 즈음에 무료로 진행되는 '마무리 정리 특강'에 참여하게 되면서 부터인데, '민법'을 가르치시는 박효근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나서 강의 스타일이 저와 잘 맞는다고 생각 했습니다. 정확한 사례 풀이와 문제점 지적 그리고 1차 객관식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지 등을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난제인 '부동산등기법' 같은 경우에는, 오영관 교수님이 주제별로 또는 목차별로 구분을 잘해주셔서 접근하는데 한 층 수월 하였고, 1차 시험 같은 경우'부동산등기법 요약집'이 암기하기 편하게 정리도 잘 되어있는 등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절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수험생 여러분들도 자신과 잘 맞는 강의를 선택하여 들어야지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처음 시작하시거나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샘플강의 같은 것을 들어보고 잘 맞는 교수님을 선택하여 공부의 방향을 잘 잡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제 2] 순환별 학습방법

1. 1 차시험 학습방법

(1) 1 순환

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나 처음 공부하지 않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상법', '민법'의 실체법과 '가족관계등록법',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의 절차법을 공부하시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목의 양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절차법적 지식은 실무를 접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법무사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원칙은 '이해'와 '암기'입니다. 이 부분은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 것 입니다.

일단 저도 처음 접해보는 법률지식에 개념적인 부분이 학습이 되지 아니하여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면서 무조건 결석만큼은 하지 말자는 대원칙을 세웠고, 정확히 수업을 이해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착실히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갔습니다.

주로 오전 강의 (오전 9시 ~ 오후 1시)가 하루에 하나씩 있었고 남은 오후와 저녁 시간에는 복습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복습시간이 정말 중요한데, 연강이 비교적 적고 복습할 시 간을 확보 할 수 있어서 학원 커리큘럼에는 대체로 만족했습니다.

저는 그날 배운 과목은 오후 복습시간에 '정확히 이해 하였는가?' 스스로 물어보고 질문에 답하면서 복습을 하였습니다. 처음 '1 순환' 공부는 '암기'보다는 100% '이해'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암기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면, 암기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순수 암기가 요구되는 부분도 있어 부분부분 암기한 파트가 있었고 교수님들께서 두문자로 기억하기 쉽게 가르쳐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해를 하고 암기가 되지 아니하여 다음에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순환이 계속 되면서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암기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민법상 '저당권'이라고 하면 '저당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개념정의가 이루어져 야 하고 그게 관련된 특징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는 말할 수 있도록 학습하였습니다. 책에 쓰여져 있기는 하지만 나만의 언어로 풀어서 자문자답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하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 2 순환

이후 '2순환'은 이해 70%와 암기 30%의 비중을 두고 공부한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를 병행하기에 기본서와 개념이해를 등한시 하게 될 수도 있으나 저는 여전히 암기보단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해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해위주의 공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순환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부분이 있었고, 수업을 쫓아가는데 조금씩 익숙해지는 시기 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고

아직까지도 이해되지 아니한 부분들이 상당수였기 때문에 이해 위주의 학습을 하였습니다.

(3) 3 순환

그 다음 '3순환' 문제풀이에 접어 들면서 암기 80%와 이해 20%의 비중을 두고 공부하였습니다. 분명히 '3순환'에 이르러서야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문제풀이 3순환인만큼, 시간이촉박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도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어서 3순환에 이르러서야 이해하려고하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하기 때문에 '일단 모르는 건 외우자'는 마음으로 공부에 임했습니다.

2. 2 차시험 학습방법

(1) 동차반

1 차 시험이 치르고 난 뒤에 가채점 결과 평균 68.5 점으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어서 2차 시험을 바로 준비하는 것에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법무사 시험은 2차 시험까지 치러야 끝나는 시험인 만큼 2차 시험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수험생 분들 중에서도 예상 합격 컷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분들도 바로 동차반에 등록하여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상당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처럼 2차를 빨리 경험하는 것이 합격하는데 있어서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들어 저도 '조금만 쉬자', '여름휴가나 다녀오자'는 유혹을 뿌리치고, 바로 동차반에 등록하여 2차 시험 공부에 돌입하였습니다.

2차 시험 경험이 전무한 저로서는 우선 목표가 '과락이라도 넘겨보자'는 심정으로 공부에 임하면서 주제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찍어서 공부하였는데, 나중에 기득권으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찍어서 공부한 파트가 이미 학습이 되어 있으므로 기득권으로 공부하는 데 한 층 수월한 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차로 될 가능성이 없다하더라도 직접 사법연수원에 가서 현장의 분위기, 문제의 체감 난이도, 논술문제에 있어서 시간 안배 등 경험해 보고 싶어서 동차반이라도 기득권으로서 보는 마지막 시험인양 시험에 임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나중에 실제 기득권 시험 때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모로 보아도 동차는 정말 경험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서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동차로 응시한 시험은 불합격 하였으나, '민법' 같은 경우에는 박효근 교수님이 찍어주신 '계약금에 의한 해제' 파트를 마지막에 보고 들어갔고, 그 당시 1문으로 나온 금전채권과 지연이자에 관한 문제는 1차 시험 때 외웠던 판례를 기억하여답안을 구성한 결과 40.5 점으로 과락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처음 공부한 형법과형소법은 과락 점수를 맞았고 민사소송법과 민사서류작성 또한 1차에서 볼 수 없었던 과목이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답안을 그리 잘 작성하진 못하여 과락 점수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은 가처분 등기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1차 시험의 지식과법전을 활용하여 아는 만큼 서술하였더니 그래도 과락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동차 시험을 치르고 나서, '그래 이 정도면 할만 하겠다.' 하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계

기가 되었습니다.

(2) 1순환

1순환은 제가 집안에 일이 생겨 사정상 학원의 현장강의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인강을 들었는데, 통학시간이 절약되어 좀 더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시험의 특성상 교수님께 직접 물어보고 궁금증을 해결하기도 하고 답안을 구성한 후 첨삭을 받아야 하는 데, 이런 것들에 제약이 있어 여러 불편함등이 있었습니다. 이 후에는 2순환에 이르러서 다시 학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저는 역시 학원에 다니는 것이 학습하기에 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차 시험의 1순환 기간은 1차 시험을 준비하던 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해위주'의 공부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접근 방식도 다르고 문제를 푸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논술형 문제에 적응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나마 인강을 듣는 것에 그치더라도 동차때 익혀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인강을 듣고 독학을 하면서도 답안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 항상 생각해 보았고, 답안을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것은 '남이 내 글을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가?'를 기준으로 답안을 구성하려고 노력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쓴 글을 바로 다시 읽어보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이를 객관화해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답안을 서술했다면 그것을 한 2~3일 뒤에 다시 읽어보는 방법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자신이 어떻게 답안을 서술했는지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되는데, 다시 읽어보면 문장 구조도 뭔가 어색하고 주어 같은 것도 빼먹고 해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횡설수설하는 식의 답안이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법률지식 외적인 것들로서 작문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판례표현이 익숙해지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다보면 이런 어려움은 자연스레 해결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3) 2순환

1순환 때는 주요 4과목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만 공부하느라 이제 2순환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부동산등기법'과 '민사사건서류작성' 그리고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 과목을 접하게 되었는데, 순수 암기과목이기도 하고 굉장히 케이스가 다양하여 시작할 때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순환부터 기본과목에 충실히 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나머지 '부동산등기법'과 '서류작성'은 주기적으로 잊을만하면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 한주제씩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민사서류'와 '등기신청서 작성'은 적어도 매 토요일마다 1시간씩은 투자해서 작성해 보는 등 배운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2순환에 이르러서는 1순환과 마찬가지로 '이해위주'의 학습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들은 답안을 구성할 때, '판례를 그대로 배끼는 것이 좋다.'는 점을 강조하셔서,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아는 판례'임에 그치지 않고, 판례 표현을 웬만하면 그대로 답안에 옮겨 적을 수 있도록 암기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아침마다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는 정말 2차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언할 수 있는 것은 독감몸살을 앓았을 때 두 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의고사는 항상 봤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면서 논술형 문제에 대한 감각을 넓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답안을 구성하면서 '목차'를 잡는 연습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목차' 구성에 대한 압박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논거가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저는 목차를 어떻게 구성할까 하는 고민할 시간에 어떤 식의 논거를 써서 채점자가 읽기 편하도록 흐름을 구성할까를 더 고민 했습니다.

또한 2순환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를 매일 보는데, 법전을 지참하고 수업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법전을 활용하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조문의 위치 찾는 연습을 하고 또한 법조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서술하여 답안의 정확도를 더욱 높이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4) 3순환

마지막에 이를 때쯤은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이 가해 졌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여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 백번씩 했던 시기 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못 외운 판례 투성이었고, 공부할 것은 많은데 시간은 촉박하여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서 이런 부담을 덜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항상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른다'는 식으로 생각을 일관했고, '결론만이 다 맞추면 논거 틀려도 된다.'는 식의 생각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실제로도 채점을 한다면, 결론만 다맞아도 합격점에 이를 수 있으니 말이죠. 어떻게든 부담을 덜어보려고 노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모의고사는 매일 보았고, 많이 쓴 만큼 실력으로 되돌아온다는 생각에 계속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3순환 중간쯤 이르러서는 쓰는 것에 의외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게 되어 쓰는 연습을 하긴 하되, 문장을 완성하지 않고 중요 '키워드' 중심으로 써보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회독 수를 늘리는데 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주제 3] 과목별 학습방법

1. 1차 시험 학습방법

1) 헌법

헌법은 20문제로 출제 비중에 비하여 학습량이 가장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판례는 쌓여만가고 여타시험이나 전년도 시험에서 낸 문제를 다음 해 법무사 시험에서 반복해서 내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 였습니다. 판례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법의 기본원리나 여러 원칙들을 습득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서, 처음 배우실 때는 '총론'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들어가시는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본권 '파트가 가장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헌법은 각 파트별로 고르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어느 파트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 파트별로 전략이 필요

합니다.

저는 '총론'부분은 기본원리의 이해를 위주로, 또한 '기본권 '파트는 판례를 위주로 학습을 하였고, 헌법기관인 '국회'나 '대통령', '법원' 파트는 헌법 조문에 충실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출제되는 문제의 경향이 그러할 뿐더러, 헌법기관에 관한 문제인 경우는 조문문제를 출제하고 단어나 숫자를 살짝 바꾸는 경향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제 비중을 고려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 저는 수업과 복습에 충실하되, 추가적인 학습을 하지는 않았고 다만, '헌법 조문집'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정확한 조문 암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차 시험에 합격할 당시에는 9문제를 맞혔습니다. 나중에 가채점을 하면서 절반 정도 밖에 득점하지 못하여 많이 실망하였으나, 저 이외에도 다른 수험생분들께 여쭤보니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저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제가 응시할때는 헌법 난이도가 상당했고 반복 출제 빈도가 적어서 대체로 고득점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 밖에 없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헌법은 정말 수업을 듣고 그 날 바로 복습하는 등, 기본에만 충실히 하면 합격하기에 충분한 점수를 확보할 수 있고 오히려 다른 과목에 시간을 더 할애하여 다른 과목 점수를 올리는 것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상법

공부 분량으로 치면 민법에 견줄 만큼 상법도 상당한 수준이 아닐까합니다. 상법은 30문제로 출제 비중이 적은 편도 아닙니다. 따라서 고민 많이 하였으나, 저는 과감히 '해상법 '파트와 '항공운송' 파트를 배제하고 , 1 순위로 '회사법', 2 순위로 '총칙'과 '상행위' 파트 , 3 순위로 '어음 .수표' 파트와 '보험' 파트로 순위를 매겨 공부의 양을 조절했습니다 . '해상법'과 '항공운송' 파트를 배제했다곤 하나, 상법 교수님인 문승진 교수님이 마무리 강의 때찍어주신 부분은 확실하게 숙지하여 최소한의 대비를 하였습니다.

상법은 판례보다는 조문위주의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많은 조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였으나, 수업을 따라가면서 두문자 위주의 암기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법은 관련된 내용이 중복하여 나오는 등 학습하는데 있어서 혼선이 많이 있으나 이를 주제별로 과목별로 구분짓고 표를 만들어 도식화 하는 등의 공부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정족수'에 관한 문제나 '의결사항'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경우와 '이사회'의 경우 공통되면서 다른 점이 있어서 나중에 되돌이켜 보면 그것이 '주주총회'에 관한 것인가 '이사회'에 관한 것인가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고, '주식회사' 이외에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의 다른 회사 형태에 관한 설명이 나오면 어느 형태의 회사에 관한 특징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표로 도식화하거나 서브노트를 활용하여 간단히 적어 놓고 반복해서 보아 확실히 구분지어 암기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30문제 중, 21문제를 맞추었습니다. 결코 고득점 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합격점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 민법

일단 저는 민법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서브노트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에 충실하여야 하기도 하지만,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다시 기본서로 돌아와서 찾아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박효근 교수님의 기본서는 굉장히 두껍고 양이 많아 항상 휴대하고 다니기 힘들지만, 정확한 학습이 선행되지 않으면 흔들리기가 쉽기 때문에 항상 보던 자신의 책을 반복해서 보는 것이 학습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기본서를 파트별로 책을 분철해 다니기도 하였고 책에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여백에 적는 등, 계속적으로 기본서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3순환 최종 문제풀이에 이르러서는 문제를 풀고 틀린 부분은 다시 기본서의 어느 파트의 어느 부분을 묻는 것인지를 찾아보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박효근 교수님의 강의 방식은 처음에 큰 목차를 잡아 개략적인 틀을 처음에 제시하고, 그다음 세부사항으로 접근을 하고 해당 파트의 판례를 깊이 설명해 주시는 방식인데, 이러한 학습방법은 민법을 큰 틀에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해위주의 학습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면에서도 강의와 제 성향이 잘 맞아 시너지가 나올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판례를 정확히 분석해서 이유와 결론을 설명해주시고 판례가 도달한 결론에 논거를 세분화 또는 요건화해서 강의를 진행하셨는데, 최근 법무사 1차 기출문제의 경향을 보면 판례를 그대로 선택지 지문으로 구성하여 지문이 굉장히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결론'만 틀린 지문으로 구성해 놓는 것이 아닌, 중간에 '논거'를 틀리게 구성해 놓는 경향이 많이 때문에, 단순히 '판례결론'만 암기한다면 오답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공부할 때는 '문제제기', '논거 또는 요건', '결론'으로 구분지어서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법 문제도 객관식 문제이고 암기과목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해적인 측면을 소홀히하고 '그냥 외우고 지나가자'라고 생각이 들기 쉬우나, 정확한 이해가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것을 고려하셔서 학습하시면 분명 좋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민법은 40 문제 중, 30문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4)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등록법은 사실 정말 순수 암기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회독 수가 많아야 좋은 점수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그러나, 제가 시험을 치룰 당시에 가족관계등록법이 난이도가 가장 높게 출제된 것으로 체감하였습니다. 문제도 10 문제 중, 5 문제를 맞추는데 그쳤습니다. 이전에 경향으로만 따져보아도 다른 수험생들도 보통 1개 내지 2개 틀리는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제가 너무 많이 틀린게 아닌가 싶었고 무엇보다도 민법에서 시간을 거의 다 할애하여서 가족관계등록법인의 시작인 41 번 문항을 풀기시작하였을 때는 시간이 11분정도 밖에 남지 않아서 시간에 쫓기던 기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5)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은 사시 경험이 있는 분들이나 다른 여타 법률관련 시험을 경험하다 오신분들도 어려워하고 법무사 시험을 처음 응시하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단순히 암기로만 해당 과목을 소화한다고 한다면 아마 학습을 포기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사집행법을 가장 전략과목으로 삼았고 그만큼 시간도 많이 할애 하였습니다. 문제도 35 문제 중 33 문제를 맞추어 상당한 고득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득점이 가능했던 이유는, '절차의 흐름'을 중요하게 여겨서 각 절차의 순서를 먼저 암기하였고 다음은 각 절차마다 특성을 공부하였는데, 민사집행법이 절차법인만큼 절차의 흐름과 그 절차만의 특징이 문제로 제출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는 큰 종이에 경매절차를 표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떤 종류'의 경매인가를 구분지었고, 그 경매의 절차가 어떠한지를 점차적으로 학습하여 나갔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매의 종류를 구분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경매절차마다 절차도 다르고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구분해 놓지 않으면 오답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금전채권'에 기한 '부동산 집행'인지, '채권집행'인지 아니면, '유체동산 집행'인지 구분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나중에서야 깨달았지만 절차의 흐름을 먼저 익히고 나니까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서 학습하는데 수월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6) 상업등기법

상업등기법은 가족관계등록법과 마찬가지로 순수 암기과목으로서의 특성이 있는 듯하여 암기위주의 학습을 진행하였고 회독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학습하였습니다. 절차법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절차의 흐름을 익히는 것도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었으나,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실제로 상업등기신청서를 보고 한 번쯤 적어보는 연습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기억에 오래 남아 암기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상업등기법은 15 문제 중, 6 문제로 좋은 점수를 획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상업등기법도 출제 비중에 비하여 양이 많다는 평가가 있어서 사실상 기본에만 충실하고 다른 과목에 더욱 시간을 할애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7)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은 2차 시험 과목으로도 이어지는 만큼 단단히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시간투자를 가장 많이 한 과목은 민법과 민사집행법 다음으로 부동산 등기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문은 반드시 지참하고 두고두고 봐야할 정도로 법조문이 중요했고 절차법인 만큼 등기 절차를 이해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실제 등기례를 보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오영관 교수님의 책에도 등기례가 실려 있긴하지만, 좀 더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객관식 문제는 등기부상 등기가 의미하는 것이나 특징 같은 것을 해석하여 글로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등기례를 보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큰 이점으로 작용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기과목인 특성상 두문자를 잘 활용하였는데, 처음에는 오영관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만 해도 정말 잘 안 외워 졌는데, 수업을 착실히 따라가다 보니까 웬만한 두문자는 머리에 입력이 되었고 아직까지 생생하기 기억날 정도로 반복을 많이 하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등원시간이나 귀가시간마다 요약집을 참고하여 표를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보려고 했었는데, 이런 노력도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은 30문제 중에서 19문제를 득점하여 그렇게 큰 점수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시험을 볼 당시에 배우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 수 출제되었고 기존 지문을 미묘하게 바꾸어 틀린 답안으로 구성하는 등 함정에 걸려 아쉽게 실점한 경우가 태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확실한 것은 부동산 등기법은 실수를 줄이기만 하면 고득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8) 공탁법

공탁법은 기본적으로 20문제 모두 맞추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는 과목입니다. 문제 수에 비하여 문제가 어렵지 않고 양도 그리 많은 편은 아닌 과목이어서 기본적으로 깔아두고 간다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수험생분들이 맨 마지막 과목이기도 하고 체력적인한계로 또는 시간부족의 압박 등으로 의외로 고득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모의고사 때마다 공탁법을 항상 적게는 5문제 많게는 8문제를 틀리기 일쑤였는데, 나중에 오답을 다시 천천히 풀어보니까 아는 것인데도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 니다.

저는 그래서 전략을 조금 바꾸어 마지막 4과목 시험인 '부동산등기법'과 '공탁법' 문제를 접할 때 우선 '공탁법'부터 풀어서 '일단 20점 내지 18점 정도는 가져가자'는 생각으로 시험에 임했습니다.

공탁법은 개념정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절차적인 측면이나 이외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어렵지 않게 따라오는 과목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매 순환순환마다, 기초에 충실하고 회독수를 늘리면 점수가 자연스레 나오는 과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는 20문제 중에서 15문제를 맞추어 조금 아쉬운 득점을 하였는데, 후에 생각해보면 기초가 조금 부실하여 같은 문제를 2, 3차례 정독하는 등 시간안배에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배우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만큼 어려웠던 것도 2문제 정도 있었는데, 소거법으로 풀면 풀 수 있는 문제인 것을 후에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항상 기초와 개념에 충실하면 좋은 점수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2. 2차 시험 학습방법

(1) 민법

'민법'은 이제 정말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 되었습니다. 최근 경향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제 1문에서는 친권남용 및 표현대리와 관련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매계약의 효력 및 그 이유에 대하여 서술하시오."라는 물음이 출제되어 중요한 주제별로 찍어서 공부한 저로서는 사실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백지만큼은 절대로 낼 수 없다.'라고 제가 스스로 세운 대원칙에 따라서 뭐라고 써보려고 하였고, 배웠던 기초에 충실히 하여 제 1의 1문의 경우, 처음에는 결론을 내리기를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하여 틀린 답을 구성하였고, 그 논거는 '계약의 성질' 즉, 낙성, 불요식 계약이라는 것부터 시작하여 대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식을 대리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서술하려 하였습니다.

제 1의 2문 같은 경우는 결론은 맞추었으나 논거가 부실하여 좋은 점수를 얻어내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대리권은 소멸하였다는 점에 초첨을 두어서술하였는데, 표현대리에 관한 내용을 누락하여 높은 점수를 받진 못하였습니다.

제 2문 같은 경우에는 순환을 거듭하면서 착실하게 공부하였다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문제로서 사례문제집에서도 자주 볼 수 있었던 유형이라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결론과 논거를 맞추긴 하였어도, 판례의 표현을 정확히 서술하지 못하였고 제 1문에서 당황한 탓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잘 쓸 수 있는 제 2문을 비교적 잘 서술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해위주의 학습을 해왔으나, 3순환에 이르러서는 공부 분량에 대한 압박 때문에 몇몇 주제를 선별하여 공부하려는 쪽으로 치우쳤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1순환과 2순환을 거치면서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해 둔 덕분에, 비록 제 1문에서 틀린 답안이라도 쓸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합격발표가 나기 전까지 사실 저는 민법에서 과락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결과는 44.7점으로 과락을 겨우 면했습니다. 기초를 충분히 다져놓은 덕분에 무엇이라 쓸 말이 조금이라도 있었고, 백지를 내지 않은 덕분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2) 형법과 형사소송법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처음 접하는 과목일뿐더러 분량도 상당히 많은 탓에 학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정말 절차가 이해되지 않아서 3순환에 이르기까지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항상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나름 흥미가 있고 개념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다면 충분히 답안을 서술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형소법'에 비하여 쉽다고 느꼈습니다. '형법'을 담당하는 오제현 교수님이 항상 '주체', '객체', '행위', '보호법익' 등등 각 죄 마다 개념분설을 하여 설명하셨는데, 이점을 참고하여 개념을 기초로 하여 먼저 개념을 외웠고 그다음 판례를 추가 하는 방법으로 형법 실력이 점점 늘었던 것 같습니다.

'형법'은 확실히 개념만 외우고 들어간다면 필요한 답안의 절반은 써내려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인 만큼 절차적인 흐름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특히 증거법 파트는 계속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유안석 교수님이 나누어 주신 도표와 전문법칙 판서를 노트에 옮겨 적고 반복해서 보는 등의 노력 했습니다. 그 절차 도표를 나중에 3순환에 가서 볼 때는 학습한 판례를 각 절차 절차마다 대입하여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형법' 같은 경우 31점을 득점하였는데, 제 1문과 제 2문의 결론과 논거를 모두 맞추었습니다. 다만, 논거를 판례표현에 충실하게 쓰지는 못하여서 감정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22.5점으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득점 하였는데, 제 1문의 1. - 가. 문항은 결론 논거를 맞추었으나, 나. 문항은 결론과 논거를 모두 틀렸고, 제 1문의 2.는 결론은 맞았으나 논거가 부실하였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조문을 찾아 쓰고 결론이법 327조 제 2호의 공소기각판결이라는 정도만 쓴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1문의 3. - 가. 문항은 조문만 찾으면 쓸 수 있고 평소에 공부한 범위라서 정확한 판례를 모른다고 하여도 기본 점수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저도 기본적인 것만 답안 구성을하여 서술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 문항은 조문상 제 몇호 인지를 잘못 파악하여 공소시효기간을 잘못 계산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제 2문도 항소심이나 재심 파트를 충분히 학습하였다면 기본점수는 얻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2문의 2. 같은 경우 잘못 파악하여 결론과 논거를 틀렸고, 가장 스스로 부족했다고 느낀 점은 설문 마지막에 괄호로 "(공시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한다)"는 전제가 있음에도 이 문구를 놓쳐서 공시송달이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답안을 구성한 어이없는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이해하기가 어려워 압수·수색, 위수증, 전문법칙 등 특정 중요 주제에만 집중 하여 다른 파트를 놓치기 쉬웠고 저 또한 다른 파트는 연습이 부족한 탓이 감점을 많이 받 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3) 민사소송법과 민사서류작성

먼저 '민사서류작성'부터 말하자면 저는 '민법'공부와 병행하여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1시간씩 시간을 따로 내어 서류작성 연습을 하였습니다. 항상 기본 틀을 작성하는 것을 평소에 연습해 두지 않으면 금방 까먹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피고 표시하는 법과 주문(청구취지)쓰는 법은 반복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청구원인은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쓰는 정도로 연습을 했고 필요에 따라서 법조문이나 판례를 조금 서술하긴 했으나, 민법 서술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논거가 있다는 정도로만 표시한 정도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민법과 연동된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송달파트나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이후 다수당사자소송 등 이해를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념적인 부분부터 익히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판례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는데, 절차법인만큼 처음에는 절차의 흐름을 표로 만들어서 각 절차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중점으로 공부하였습니 다.

민사소송법은 결론을 잘 내는 것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즉, 기각인지 각하인지 인용인이 아니면 일부인용인지, 일부인용이라면 조건부 인용인지 상환이행 판결인지 등 결론적인 부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논거도 아예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 판례의 결론부터 잘 숙지

해 놓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파트에서 결론 내리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중요한 부 분이기도 하여 꾸준히 공부했는데, 오히려 채권자대위권파트가 '민법'에서 출제되긴 하였어 도 꾸준한 연습 덕분에 답안서술이 용이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민사소송법은 58.25점을 받았고, 민사서류작성은 16.25점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독립당사자참가' 파트가 출제되었는데, '다수당사자소송'파트가 평소에도 중요한 논점으로 다루어져서 대비하고 있던 찰나에 문제로 출제되어 결론과 논거를 모두 잘 서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판례를 충실하게 서술하지 못하여 약간의 감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사서류작성은 기본 틀은 충실하게 작성하였으나, 청구취지 부분에서 이번에 문제로 나온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전혀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사안을 접하다 보니 알지 못하여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배제한 채 청구취지를 작성하여 많은 감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4)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서류작성

이 과목은 모든 수험생이 시험을 보는 직전까지도 가장 어려워하고 고민하는 과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험장에 가서도 발목을 붙잡는 과목으로 저에게는 상당히 어렵게 다가 왔습니다. 어느 부분이 나올지 전혀 알 수도 없어 과목 전반을 공부하여야 하는데, 그 분량도 엄청나 고 각 주제마다 목차를 외워야 하는 것도 힘에 부쳤습니다. 2순환을 시작하면서 3순환 전까 지는 매일 한 주제씩을 보았고, 3순환부터는 두 개의 주제를 보았습니다. 단순히 본다고 해 도 도무지 외워지지도 않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기본만 하자'는 생각에 기본 틀만 외우기로 하였습니다. 즉, 의의, 신청정보, 첨부정보, 등기관의 조치, 등기후 절차라는 기본 목차만 기준으로 하여 각 주제를 암기하였 고 나중에 어느 정도 암기가 이루어지면 각 주제마다 특징을 추가하여 살을 붙였습니다. 가장 도움이 된 공부방법은 등기신청서류작성과 병행해서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하는 방법이 었습니다. 2순환까지만 해도 익숙하지 않아서 병행해서 하지못하고 등기신청서류만 매주 토 요일마다 시간을 내서 따로 하는 정도였는데, 3순환부터는 부동산등기법 주제 두 개를 볼 때 그 주제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서류작성도 병행했습니다. 오영관 교수님이 강의를 하실 때 도 등기신청서류작성과 부동산등기법을 병행해서 강의하시는데 이러한 점은 절차를 이해하 고 암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등기신청서류는 평소에도 계속 연습을 하여서 나중에 을지의 '첨부정보' 쓰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나, 항상 헷갈리는 부분은 갑지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글자 적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갑지만 따로 작성하는 연습을 많이 하였고 나중에 작성한 갑지만을 따로 모아 틀린 부분을 체크하고 다시 보아 정확히 숙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등기법은 42점, 등기신청서류는 20.125점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어려워서 소홀히 하고 지나갔던 '대지권'파트가 나와서 당황하였는데, 기초적인 의의나 신청정보, 첨부정보 그리고 등기의 특징 같은 것을 숙지해 놓아서 그나마 쓸 말이 있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반드시 법전을 활용해야 하는 과목으로 저는 문제를 읽자마자 법조문을 찾아서 관련 조문을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쓰신 분들은 몇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수험생분들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인 내용만 써도 아예 어긋나는 내용이 아니면 어느 정도 배점을 준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횡성수설해서 뭐라고 쓴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등기신청서류는 공유물분할관련이 나왔는데, 소유권 파트 중에서도 연습을 한, 두 번 정도밖에 안하던 부분이어서 어떻게 써야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등기신청서 작성할 때에 각 등기마다 특징을 잘 파악해 두어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라는 점을 잘 고려하여 제목과 등기원인 그리고 등기목적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할지분'을 적지 아니하고 잘 알지 못한 탓에 등기권리자 의무자의 '지분(개인별)'란에 이전되는 지분을 작성하여 감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제4] 드리고 싶은 말

1. 1차 시험은 스킬도 필요합니다.

법 지식만 놓고 보면, 1차 수험생들 중 저보다 지식이 많은 분이 태반일 겁니다. 법무사 시험이 법률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이긴 해도 객관식 찍기 시험인 만큼 문제풀이 스킬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차 시험 한 달 전까지도 시간안배에 매 번 실패하여 2과목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법'을 아예 풀지도 못하였고, 4과목의 '공탁법'은 항상 10문제 이상을 놓치곤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유심히 분석하고 찾아보았고 '단순 실수'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문제를 정독하여 2, 3차례 읽었고 이러한 문제는 시간부족 사태를 만들어내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u>정확히 딱 한 번 읽고 찍는 연습을 하였고, 한 번 정확히 읽고 이해 안가거나 고민되면 다시 읽어도 마찬가지다</u>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런 문제풀이 스킬을 개선 하다 보니 공부를 더 한 것도 아닌데 점수가 늘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수험생분들도 점수가 나오지 않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런 스킬적인 부분을 개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백지는 절대 내지마세요!

2차 시험을 치르면서 결론이나 논거를 몰라도 모르면 애국가라고 써서 내라고 교수님이 농담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이 말이 깊게 다가 왔습니다. 백지는 절대 점수를 줄 수 없기에 백지를 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매 번 모의고사를 치러왔고 본 시험에서도 모르는 문제도 그냥 아는 만큼 쓰도록 하였고 그나마 관련되는 내용이라도 횡설수설 썼습니다. 만약 모른다고 백지를 냈으면 0점이겠지만, 그나마 틀려도 틀린내용을 쓰면 1점이상은 주는 것 같습니다.

3. 법전은 항상 활용 하세요

2차 시험은 아시다시피 법전을 활용할 수 있는데, 법전만이 유일한 무기입니다. 저는 한자를

잘 알지 못하여 항상 읽을 때마다 번역하기도 귀찮고 어려워 해서 멀리 했는데, 틈틈이 연습해 두다 보면 본 시험 때 큰 자산이 됩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반드시 법전을 활용해야 하는 과목이고, 이번 형사소송법 과목도 법전이 없으면 풀기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연습이 되어있지 않아 법조문의 한자를 잘못 읽는 일이 발생해 틀린 결론을 쓰는 사태가 벌어졌으나, 간신히 과락은 면해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시험을 치르고 집에 갈 때는 그 틀린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정신적 압박을 받았고 그 때문에 평소에 법전을 소홀히 했던 제 자신을 한탄하기도 하였는데, 여러분은 부디 미리 잘 대비를 해두셔서만전을 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마치며..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에게 미천한 경험 이긴 하나 저의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수기를 작성합 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묵묵히 그 자리에서 버티고 계신다면 반드시 합격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법무사 단기학원 교수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